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0월 22일(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9. 30. 이인순 의원 외 14명 발의(의안번호 345호)
- 나. 회부일자: 2024. 10. 15. 회부
- 다. 상정일자: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인순 의원)

가. 제안이유

여성폭력의 범위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2) 협력체계 구축 (안 제4조)
- 3)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 4) 실태조사 (안 제6조)

- 5) 여성폭력 예방교육 (안 제7조)
- 6) 관련정보의 제공 (안 제8조)
- 7) 비밀 준수 의무 (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2)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3)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10. ~ 2024. 10. 1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강영숙)

가. 개 요

- 본 전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에 정의된 폭력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까지 여성폭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정 2018.12.24., 시행 2019.12.25.)을 상위법으로 변경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현 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법에서 규정한 지자체 책무사항 포함 및 불필요한 조항 정비**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내용을 상위법에서 정한 지자체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개정안에 맞추어 지역연대 보고 및 관계기관 협조 조항을 삭제하여 구 차원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함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①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보호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기본정책 2.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5.그밖에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연대에 보고를 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여성폭력 피해 현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3.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나.여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다.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 라.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마.여성폭력 추방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삭제)

○ **안 제6조(실태조사) 실효성 있게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상위법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사의 경우 필요시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조항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실태조사)①구청장은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u>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u>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여성폭력 발생요인·발생유형·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지역연대에 보고를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u>필요한 경우에는</u>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 **현행 조례 제5조~제14조(지역연대 설치·운영) 조문 삭제**

상위법 제11조는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상 설치·운영하도록 한 지역연대(위원회)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고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현행 3장 21조로 구성되어 있는 조항을, 9조의 조항으로 일괄 정비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여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중심으로 조항을 정비하였음.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0월 22일(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9. 30. 이용진 의원 외 13명 발의(의안번호 346호)

나. 회부일자: 2024. 10. 15.

다. 상정일자: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용진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3)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의 내용, 예방 교육 규정(안 제4조~제6조)
- 4)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의무 규정(안 제7조~제8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3)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10. ~ 2024. 10. 1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강영숙)

가. 개 요

- 본 제정안은 스톱킹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스톱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스톱킹 범죄는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기소인원 '22년 3,456명, '23년 4,819명, '24. 1~3월 1,481명 (24.5.12 법무부 보도자료)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스톱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1) 스톱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행위 및 같은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를 말한다.

○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책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또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사업)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다음 각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1. 스토킹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안심장비 등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비 확충 및 지원사업
3.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4.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스토킹 예방 교육)

-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여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중심으로 조항을 정비하였음.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0월 22일(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0. 14.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336호)

나. 회부일자: 2024. 10. 15.

다. 상정일자: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복리증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분을 개선·보완하여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3개월에서 전입 즉시로
변경하여 성북구에 전입한 대상자의 수당 지급의 연속성 도모
(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 2) 보훈예우수당의 확대 지급을 위하여 대상 관련 조항 정비
(안 제8조제1항~제4항)

- 3) 수당 등의 지급 중지 및 환수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수급 등 대상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정 (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 예산조치 :
 - 소요예산 : 774,000천원
 - 보훈예우수당 신규대상자(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분 30천원*2,150명*12회
=774,000천원
- 3)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8. 22. ~ 2024. 09. 11.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 요

- 본 전부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성북구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제1항은 기존 조례에서, 서울시 보훈수당(참전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지급대상자를 우리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던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음. 이는 서울시 타구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목적을 둔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함.

※ 2024. 10월 현재 서울시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 22개구

▶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25년 성북구 신규 대상) : 2,150명(24.1~6월 평균)

<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현황 (2024. 9월 현재) : 총 1,910명 >

1.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1,664명 (월 15만원)
2. 서울시 보훈예우수당(4.19유공, 5.18유공, 특수임무, 전(공)상군경, 공상공무원) 160명 (월10만원)
3. 생활보조수당(국가유공자 선 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86명 (월20만원)

< 성북구 보훈수당 지급 현황 (2024. 9월 현재) : 총 1,936명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선 순위 유족) : 1,936명 (월 5만원)

- 안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및 안 제10조(위문금 지급)는 기존 조례에 “3개월이상 거주자”로 명시하였던 거주요건을 삭제한 것으로 성북구 전입 즉시 연속성 있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임. 이는 ‘24. 7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2)이기도 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보훈예우수당 지급)①(생략)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중 <u>국가보훈처</u> 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u>계속 3개월이상 거주한</u>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u>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u>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 ----- <u>국가보훈부</u> ----- ----- <u>거주하는</u> ----- ----- ----- (삭제)
② (삭제 2019.12.26.) ③ <u>보훈예우수당</u> 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④ <u>보훈예우수당</u> 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중략… <신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③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중략). <u>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u> ④ 그 밖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4(위문금 지급)① 생략……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u>계속 3개월이상 거주한</u>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문금 지급)① 생략……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u>거주하는</u>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2632(2024.7.10)호

지자체 조례의 보훈수당 거주기준을 주민등록일 기준으로 개선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수당지급 혼선 및 민원발생 예방, 국가보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 조속 정비 권고

- **안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기존 조례상 규정되어 있던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삭제하였음. 이는 지급액 인상 등에 따른 변경시,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점을 개선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수당을 운영하여 수혜대상자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사망위로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u>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u>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중략) ② ~ ③ (생략) <신설>	제10조(사망위로금 지급)① ----- ----- -----사망위로금을 -----,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중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안 제11조(수당등의 지급중지 및 환수), 안 제12조(지급대상의 관리 등)**는 신설 규정으로 지급대상자 사망, 전출입, 부정수급자 등의 수당 지급 중지와 환수 등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조문 정비사항으로 '23. 6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급 관련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 것,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성북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수당 지급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이 입법취지와 내용이 적절함

- 다만 서울시 보훈수당 중복지원금지 규정 삭제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기에 집행부의 비용부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 (확대 대상) 서울시보훈수당(3종) 지급대상자 : 2,150명 (‘24.1~6월 평균)
- ▶ 시행일자 : 2025. 1. 1
- ▶ 소요예산(안) : 774,000천 원 (1인 월3만원)
 - 보훈예우수당 신규대상자 2,150명*3만원*12회=774,000천 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0월 22일(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0. 14.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337호)

나. 회부일자: 2024. 10. 15.

다. 상정일자: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황원숙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에 따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금액 수정(안 제2조 관련 별표)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서 3,000원으로 금액을 명시하고자 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22. ~ 2024. 9. 11.(20일간)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영숙)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총리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2023. 11.22. 개정되어 2024.11.23. 시행 예정임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제2항 관련 [별표]중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금액'란에 "3,000원"을 명시한 것으로
기존 조례상 '금액'란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3,000원"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은
(개정 전)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후)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